

2025-11-11

(25-7442)

페이지: 1/1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본: 영어

##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b>통보국가:</b> <u>중국</u> <b>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b>
2. <b>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b> 중국 생태환경부
3. <b>조항 2.9.2 [X],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기타에 근거해 통보:</b>
4. <b>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b> 경량 차량(HS code(s): 870323), (ICS code(s): 13.040.50)
5. <b>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b> 중국 국가표준 "'경량 차량 배출가스 제한 및 측정법(CHINA VI)' 개정안(GB 18352.6—2016)"(9페이지, 중국어) <b>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b> <a hre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HN/25_07841_00_x.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HN/25_07841_00_x.pdf</a>
6. <b>내용:</b> 본 개정안은 배출가스 제어장치, 조작장치(Defeat device) 및 배출가스 보조 제어장치의 정의를 수정하여 경량 차량에 대한 CHINA VI 표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형식승인 차량의 봉인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대상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 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CAL ID와 CVN 등록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형식승인 연장에 대한 등가성 조건을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차축을 갖춘 차량의 시험 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기술 시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표준화하고 있다.
7. <b>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b>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환경 보호
8. <b>관련 문서:</b> 경량 차량 배출가스 제한 및 측정법(CHINA VI) (GB 18352.6-2016 )
9. <b>채택 예정일:</b> WTO 사무국 고지 후 90일 <b>시행 예정일:</b> 채택일로부터 6개월
10. <b>의견 제출:</b> <b>의견 마감일:</b> 2025-12-15 <b>[ ] 통보일로부터 60일</b> <b>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b> 중국 WTO/TBT 국가 통보 및 질의처 전화 : +86 10 57954633/ 57954627 이메일: <a href="mailto:tbt@customs.gov.cn">tbt@customs.gov.cn</a>